



후를 위해 요양시설과 공원묘지를 준비한다면 기부금 공제를 요청할 만큼 공익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적어도 50% 이상의 재정이 현금하지 않는 제3의 수혜자들을 위해 사용될 때 사회적 공익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개신교는 어느 단체보다도 적극적으로 사회 봉사활동과 구제활동을 하고 있다. 각종 복지금, 구제기금 조성에도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일반적인 평가는 부정적이다. 선행을 남이 모르게 하라는 불문율이 있지만 이제는 교회가 재정 관리에 있어서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을 사회에 알려야 한다.

이제 교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사회가 강제적으로 요구하기 전에 교회 스스로 교회사역과 재정운영에 대하여 내부의 공유를 넘어 일반 사회에도 공개한다면 실추된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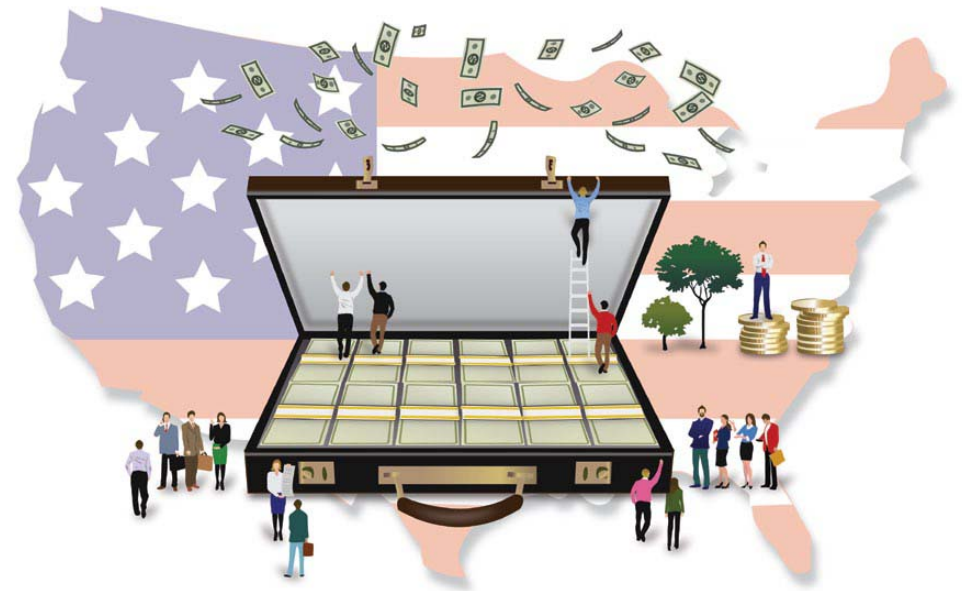
넷째, 재정운영 기준과 보고양식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 싶다.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사업과 구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사업은 돈을 지불하는 사람에게 물건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구제는 댓가를 지불한 사람과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다르다. 이런 시각에서 한국 교회는 재정지출을 대부분 누구에게 제공하고 있는지, 몇 %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몇 %의 구제를 하고 있는지 구분해 보고 싶다.

일반적인 교회재정 사용내역은 목회자 사례비, 직원 급여, 행정관리비, 임대료, 지급이자 또는 차입금 상환금 등으로 분류된다. 그 외에 행사비, 교육비, 선교비, 구제비 등이 있다.

만약 교회재정의 90%정도를 현금 하는 교인들만을 위해 사용한다면 교회재정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사업자인가? 공익단체인가? 이러한 재정운영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을까? 댓가를 지불하는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친목단체 또는 수익단체라 할 수 있다. 교회가 현금하는 교인들을 위해 건물을 짓고, 예배를 위해 좋은 악기와 전문음악가를 세우고, 식사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녀를 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들의 노



**이현화** 가림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이며 미국, 한국 공인회계사이다. 경희대 경영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경희대, 숭실사이버대학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기독교경영연구원 부원장, 한국기독교실업인회, 신동아학원, 기아대책 및 이랜드 재단 감사이다.



##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 및 투명성 보장제도

◎ **박두준** (재)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

지난해 여름 미(美)국세청은 한 비영리단체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교회와 종교단체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지 못했다'는 것이 소송 이유였다. 판사는 미(美)국세청의 교회 및 종교단체 관리에 대한 업무태만을 인정했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도가 선진화되려면 일반대중, 비영리단체 관계자뿐 아니라 정부의 협력과 감독도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들어 비영리단체의 투명성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정부와 기부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비영리법인 회계제도와 규정에는 흔히 '선진화된'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다. 그러나 위 사건과 같이 미국사회도 한국과 같이 종교단체에 대한 면세혜택 논란에 있어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고무적인 것은 이미 미국에서는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들의 투명성과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 2012년 미국 총기부금의 32%가 종교단체에 기부

매년 미국의 기부금 현황 보고서를 출판하는 <Giving USA> 2013년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미국의 총기부금 3,162억 3,000만 달러(348조원) 중 32%에 달하는 금액인 1,015억 4,000만 달러가 35만 개의 종교단체에 기부됐다. 이는 비영리단체 중 가장 높은 비율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교육분야(13%)보다도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기부금 현황만 보더라도 종교단체가 미국의 비영리단체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표 1. 미국의 기부현황

구분	1.종교	2.교육	3.휴먼서비스	4.재단기부	5.건강	6.공공	7.국제	기타
기부금(십억\$)	101.54	41.33	40.40	30.58	28.12	21.63	19.11	33.52
비율	32%	13%	13%	10%	9%	7%	6%	11%
원화(조원)	112조	45조	44조	34조	31조	24조	21조	37조

출처: <Giving USA> 2013

## 미국 교회, 면세혜택 마다하고 국세청에 자발적으로 등록

미국의 비영리법인이 면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면세단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영리법인은 설립한 달로부터 27개월 이내에 해당 양식을 제출하고, 테스트를 통해 사립재단 또는 공공자산재단으로 분류되어 면세단체 자격을 받게 된다.

반면 교회는 비영리법인 중 유일하게 위의 신고절차 없이 국세청으로부터 자동으로 세금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가 이러한 혜택을 마다하고, 다른 비영리법인과 똑같이 까다로운 신고절차와 면세단체 자격테스트를 거쳐 국세청에 면세단체로 자발적 등록을 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미국세청은 등록된 비영리법인 리스트를 대중에 공개하는데 대중들은 이 리스트를 통해 각 단체의 신뢰여부를 판단하고, 개인 기부금 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미국세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기부금액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다 많은 대중에게 투명성과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비영리법인의 투명성이 기부자가 법인의 신뢰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건이 되면서 2003년 면세단체 신고서를 제출한 종교기관이 10만 개였던데 반해 2009년에는 30만 개로 세 배나 증가했다.

표 2. IRS 재단별 개인 기부금 공제율

Code	공익법인 유형	제한 공제율
PC	공공자선공익법인(a public charity)	50%
POF	사립운영재단(a private operating foundation)	50%
PF	사립공익법인(a private foundation)	30% (일반적으로)
GROUP	모회사와 자회사	경우에 따라 다름
LODGE	국내공제조직(a domestic fraternal society) 501(c) (8)(10)	30%
UNKWN	공공자선공익법인 자격이 종결되지 않은 공익법인	경우에 따라 다름
EO	공공자선공익법인과 사립공익법인을 제외한 IRS 170(c)에 속하는 공익법인	경우에 따라 다름
FED	연방정부에 속하는 공익법인	50%
FORGN	해외에 법인주소가 있는 공익법인(주로 국내에서 설립되었음)	경우에 따라 다름
SO	지원단체(Supporting Organization) 또는 기능적으로 지원단체와 통합된 단체	50%
SONFL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지원단체(Supporting Organization) 와 통합된 단체	50%
SOUNK	구분되지 않은 지원단체	50%

## 미국 종교단체의 면세자격과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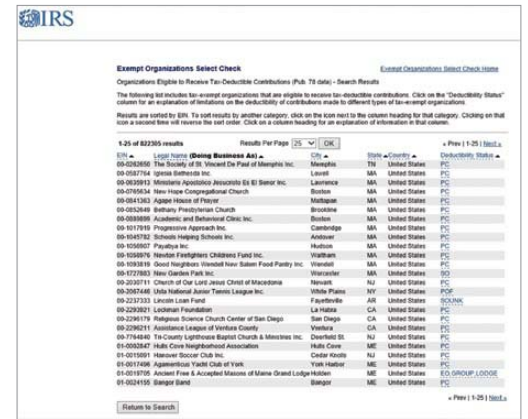
미국의 종교단체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면세단체 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체는 종교 또는 자신의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손이익을 개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 또한 해당 단체는 입법 활동에 영향을 주는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정치 캠페인에 연관되서도 안 된다.

일반적으로 연간수입이 2만 5,000달러를 넘는 미국의 비영리법인들은 미국세청에 매 회계연도 이후 5개월이 되는 달의 15일에 해당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연간 총수입이 10만 달러 미만이거나 회계연도 총자산이 25만 달러 미만인 단체는 약식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일반 종교단체도 동일한 신고의무가 있지만 교회, 지역단위 교회의 협력 단체, 종파연합에 의해 지원을 받고 해외에서 주로 자선활동을 하는 단체, 단순 종교 활동만을 하는 단체는 신고를 하지 않는다.

미국세청은 비영리법인이 면세단체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수익사업에 관해서는 세금 징수를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회계연도의 총수익사업 수입이 1,000달러 이상인 종교단체는 반드시 양식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이후 5개월이 되는 달의 15일에 제출해야 한다. 모든 사업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이뤄지거나 기부 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단체 구성원의 편의를 위한 수익사업 또한 면세 대상이다. 예를 들면, 교회에서 주차장을 운영하여 교회직원, 교인 또는 방문자들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면 이에 따른 수익은 면세대상이다. 그러나 일반인을 위한 수익사업은 과세대상이다.

참고, 미국세청이 제공하는 미국 면세단체 리스트(예시)



자료출처: 미국세청(IRS) 홈페이지, <http://apps.irs.gov/>

## 미국세청의 종교단체 관리

미국세청은 교회가 면세자격에 미달되거나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포착됐을 경우, 해당 교회의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감사가 해당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의회는 감사와 관련한 규정과 절차를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회계감사 실시 사유를 해당 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 교회가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기다린다. 해당 교회가 주어진 기간 안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소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90일 안에 정부조사 또는 회계감사 실시를 통보한다. 일반적으로 회계감사는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2년 내에 마무리한다. 정부의 감사와 무관하게 교회와 종교단체를 포함한 모든 미국의 면세단체는 단체의 회계문서와 외부감사에 필요한 모든 기타 관련 서류를 일정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체의 수입과 지출(급여 포함)기록, 자산(투자자산 포함)의 취득과 처분 기록은 세무신고 후 4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미국은 국세청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투명성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성직자의 자발적 급여 공개와 세금 납부도 미국 종교단체의 투명성을 유지하는 요인이다. 미국의 다른 면세단체들과 달리 교회에 소속된 성직자(정규직, 임시직 포함)는 급여를 신고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일부 성직자들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급여를 신고하고 있으며, 이때 교회는 반드시 미국세청에 급여와 원천징수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나가면서

미국은 국세청을 통해 비영리법인의 면세혜택과 사후관리를 일원화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과 투명성을 검증하고, 관련 정보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있는 것이 미국 비영리법인의 대표적인 투명성 보장제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기부 투명성 제도를 2008년도에 제도화하여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2014년 1월 24일 입법 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자산 5억원 이상 수입 3억원 이상의 공익법인은 정부가 제시하는 표준공시양식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에 공개해야 한다.

특히 개정 예정인 표준공시양식이 적용되면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투명성 제도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종교단체도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 같은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박두준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하고 2004년부터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 상임이사, 2008년부터 재단법인 한국가이드스타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희망나눔 나눔 정책네트워크 위원이자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자문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 깨끗한 교회재정의 실제적 적용

### -100주년기념교회-

윤병환 (100주년 기념교회 사무장)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기념교회(이하 100주년기념교회)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모원(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46)과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추계로 235)의 법적 소유주인 '한국기독교 100주년기념재단'이 두 성지를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해, 그리고 한국 기독교선교 100년의 신앙과 정신을 계승하고 선교 200년을 향한 비전을 함양하고자 2005년 7월 10일 창립한 교회로, 독립교단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한독선연)에 소속되어 있으며 현재 서울시 마포구 양화진길 46(합정동)에 위치하고 있다.*

#### 1. 재정집행 및 보고 원칙(근거조항)

100주년기념교회 정관 제7조 2항에 보면 헌금의 50%는 교회를 위해, 나머지 50%는 교회 밖을 위해 사용토록 (이재철 목사의 '새신자반' p.293-295 참고) 재정집행의 대원칙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담임목회자 소신 차원을 넘어 교회 창립정신의 하나로 정관에 공개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교회 홈페이지 <http://100church.org> 교회소개>교회정관 참조)

이러 정관 제7조 3항에 따르면 재정보고 범위 및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 바 매월 첫째 주일에 전월의 재정입출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교인에게 1월 단위까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매월 초 열리는 상임위원회(전임교역자 및 봉사팀장들로 구성된 의결기구로 일반교회의 당회 성격과 유사하나 차이가 있음)에 서면으로 상정한 후 의견을 거쳐 다음 주일에 각 교인들에게 인쇄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교회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란에 상시 게재하여 누구나 열람 가능토록 되어 있는데, 2005년 7월 창립 이래로 매월 공시해오고 있다.